□ 연구논문 □ https://dx.doi.org/10.16936/theoph..40.202204.171

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의 역할 모색*

심현주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우교수

1. 서론
2.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의 내용과 현황
 2.1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의 현황
 2.2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의 내용과 문제점
3. FABC의 조직과 활동
 3.1 FABC의 조직과 활동현황
 3.2 FABC 활동의 한계
4. 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FABC의 역할
 4.1 FABC의 기회와 소중심체제의 필요성
 4.2 인권에 기초한 평화공동체 길잡이
 4.3 국가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4.4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교회의 역할
5. 결론

* 본고는 2020년도 (사)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논문임.

1. 서론

21세기 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다. 군비강화, 지속적인 영유권 분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북한의 핵보유 선언 등이 아시아의 안보위기를 고조시킨다. 한미 합동훈련과 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도 대한민국에서 매년 실행된다. 나아가 경제전쟁, 무역전쟁, 백신전쟁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불안 국면을 가중시킨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간 경제격차, 여전히 남아있는 냉전의 이념들, 권위적 정치체제,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갈등이 늘 내재되어 있다. 아시아의 평화는 아득히 멀어 보인다.

국제사회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책으로 국제연합과 지역연합 결성을 시도했다. 지역연합 결성은 198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이런 실행은 세계평화 없이 국가와 세계사회구성원들의 안녕과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 교회를 주목한다. 교회는 각 국가 안에 존재하지만,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초국적 공동체로 조직되어 있다. 국가편에서 볼 때 교회는 늘 국제적이고 국가와는 어느 정도 독립된 구조를 가진다. 이런 구조는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초국적 차원의 연대활동을 전개하는데 매우 탁월한 장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의 과제를 찾는 것이다. 먼저,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의 내용과 한계를 조명한다(II). 다음으로, FABC의 조직과 활동을 개괄한다(III). 이 두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마지막 IV장에서 FABC의 역할을 몇 가지 제언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연합의 성공사례인 유럽연합(EU)을 부분적으로 참고한다.

2.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의 내용과 현황

2.1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의 현황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최초이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남미국가공동체(CSN),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등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는 아직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권위적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

아시아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컸다. 서구와의 대외관계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체제나 다자주의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외부에서도 거대한 아시아가 뭉치면 다른 지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 물론, 아시아에도 ASEAN(1967), APEC(1989), ARF(1994)와 같은 지역 연합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연합체에는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시아 지역연합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처음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제안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었다. 1990년 마하티르 수상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중국의 리펑총리에게 동아시아 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블록 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의 블록경제 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미국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미국 주도의 다자간 경제 질서에만 의존하기보다 아시아에서도 지역 경제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도 3P(평화, 번영, 진보)를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를 제안한 바 있다. 아시아 통합에 대해서 정치안보분야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경제 분야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최근 논의의 지평이 아시아로 넓어지고 있다.[2]

2.2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의 내용과 문제점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은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정치안보 공동체

1) 박제훈,「아시아지역통합 연구: 로드맵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비교경제연구』, 19/2(2012,12). 105.
2) 이경주,「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법학연구』, 18/3(2015,9), 28; 박제훈, Ibid., 102.110.

차원이다. 주로 동북아 중심의 담론이 제안되었다. 진보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인 와다 하루키(1938~)는 환경보호, 경제협력, 핵 위기극복 등을 위한 다극적인 안전보장 체제를 언급했다. 특별히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 한반도를 주목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2000km 비핵화, 동북아 개발은행, 두만강 유역의 공동개발을 비롯한 경제공동체 건설, 군축과 인권 및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안보 공동체를 제안했다.[3] 재일한국인 정치학자 강상중(1950~) 역시 다극적인 안전보장시스템에 동의하면서,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제안했다. 남북의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 국(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의 승인을 받아 한반도를 영세 중립화하자는 것이다. 국가들 사이의 완충지대가 마련되면서, 갈등을 중재할 가능성이 생긴다.[4] 동북아 공동체 담론에서는 한반도의 역할이 강조된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가교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의 화해, 주변 강대국을 중재하는 한반도의 완충지대 역할이 동북아 평화의 주요한 하나의 전제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외교안보 비전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균형자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제안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음으로, 경제공동체 차원이다. 신자유주의의 경제공동체 담론은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현재 아세안+3을 축으로 하는 시장통합이 주요 모델이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창립되었다. 베트남전이 시작되면서 동남아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동맹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점차 무역관계로 변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해에 30주년을 맞이한 아세안은 한중일 3개국 정상을 정상회담에 초대하여 외환위기를 함께 극복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때부터 아세안+3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상하는 핵심 축이 되었다. 아시아경제공동체를 구상하는 주목할 만한 선언도 있다. 2010년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은 보편적 아시아주의 선언을 채택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동체는 다른 지역이나 공동체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작은 나라들의 의견도 존중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지역공동체가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아시아는 무엇보다

3)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신지역주의 선언』, 이원덕 옮김, (서울: 일조각, 2004), 242-271.
4) 강상중,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이경덕 옮김,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2.), 129-133.

도 각 국가나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기초로 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으로 경쟁과 효율 일변도가 아닌 협력과 형평 등의 가치를 같이 배려해야한다. 자유와 민주주의 등 보편가치 위에 아시아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내용이 21세기 보편적 아시아주의의 기본내용이 될 것이다.'[5] 다음 해,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은 보편적 아시아주의에 기초한 지역경제공동체의 목적을 제시했다. '경제통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왔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경제통합의 확대와 제도화는 지역 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긴요하다. 아시아인 상호간 공존공영의 기반을 다지고, 인류사회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6] 아시아경제포럼은 시장통합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평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을 주창하고 있다. 세계 자유시장의 무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특별히 환율경쟁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통합을 시도한다. 이런 시도는 회원국들의 공존이 아닌, 지역 내 경제적 위계질서를 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 간 경쟁력이 동등한 수준이 아닐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다르다. 더구나 아세안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1993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 Free Trade Area)을 설립했어도 이 지역의 무역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7] 이런 상황에서 여전이 자국민 중심인 국가들의 경제통합은 평화를 향한 길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의 담론이다.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시도다. 지역정체성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동질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8] 하버드 대학 교수인 투 웨이밍(Tu, Weiming)이 주창한 '유교자본주의'나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그런 시도에 속한다. 그 주장은 아시아 경제성장이 서구의 가치가 아니라 유교의 가치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이런 시도들 역시 서구의 그리스도교 문화와 다른 아시아의 유교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사무엘 헌팅턴(S. Huntington)이 사회주의 진영 붕괴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문명의 충돌 시대라고 진단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문화권의 대립구도

5) 박제훈,「아시아지역통합 연구」, 111-112.
6) Ibid., 106.
7) Elmar Altvater/ Brigit Mahnkopf, *Grenzen der Globalisierung, Ökonomie, Ökologie und Politik in der Weltgesellschaft*,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1997), 381. 419-420.
8) Ibid., 414.

는 동서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면서 연대의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아시아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옹호한다는 문제가 있다.[9]

현재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은 과거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반성하고 모든 민족의 공존번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10] 그럼에도 그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번영의 실질적 수혜자는 누구인가? 아시아는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침해가 여전히 정당화되고 있다. 인권이 평화를 위해 억제되는 곳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논의 없이 평화공동체가 만들어 진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아시아 정부들은 지역적 인권제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아시아는 2개의 주요 국제인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11] 김대중 정부의 3P에도 사람(People)이 없다. 정부들의 활동이 실제로 인권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아시아에서 지역적 인권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력한 자국민 중심주의도 지역적 인권제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국제인권제도도 있지만, 지역적 인권이행제도는 지역별로 인권에 대한 보다 심각한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다. 따라서 지역적 인권제도는 인권증진과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더 나아가 아시아의 경제통합과 안보 공동체가 '인간'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로힝야 난민인권 탄압을 빌미로 2021년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소수민족의 인권과 미얀마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 또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과 북한의 정상화 사이의 갈등은 아시아에서 인권이 민족주의, 민주화, 국가안보, 경제성장이라는 이슈들과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문제들이다.

---

9) HyunJu Shim, *Die herausforderung der koreanischen Kultur durch die hegemoniale Globalisierung,* (Frankfurt am Main· London: IKO, 2004), 163-193.

10) 이경주,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34-35.

11) 장복희,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제도 설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국제법 연구』, 5/1(1988.5), 34-35.

3. FABC의 조직과 활동

3.1 FABC의 조직과 활동 현황

주교회의는 19세기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다. 1889년 8월에 발표된 주교성성의 훈령은 이 회의들을 명시적으로 주교회의라고 칭했고, 교회법은 주교회의에 대해 규정했다. "상설기관인 주교회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특히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의 회합이다."[12] 요한 바오로 2세는 제 삼천년 기를 맞아, 대륙별 주교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주교들이 각 대륙의 요구들과 고유한 상황에 따라 복음화 활동을 하도록 고무하기도 했다.[13]

FABC는 16개 국가 가톨릭주교회의들의 자발적 협의체이며, 바티칸의 승인을 받아 1972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70년 바오로6세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을 때, 아시아주교들이 모였다. 이 모임이 FABC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2020년이 50주년이 된다. 코로나로 2년이 연기된 올 2022년 5월에 50주년 총회가 열린다. FABC의 목적은 회원국들의 결속을 다지고 아시아 사회와 교회의 복지에 대한 공동책임을 맡는 것이다.[14] 현재 FABC의 정회원으로 소속된 주교회의는 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동티모르 등이다. 독립된 주교회의는 아니지만 준회원으로 있는 국가는 네팔, 마카오, 몽골, 노보시비르스크(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홍콩이다.[15]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FABC의 첫 의장은 서울 대주교 김수환 추기경(1973-77)이었다. "FABC는 정기총회,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중앙사무국, 위원회들로 이루어지는 위계

12) 한국 주교회의 교회법 위원회(역),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447조.
13)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아 교회』(ECCLESIA IN ASIA),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2-3항.
14) 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 http://www.fabc.org.; 에드문드 치아, 「아시아주교회의 연합회의 역사와 조직」, 『사목』, 이준혜 편역, 308(2004.9), 21-22.
15) 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 Ibid.; 위키백과사전, Federation on Asia Bishops, https://en.wikipeida.org/wiki/.

조직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한다."(정관 제6조)[16] 위원회는 현재 9개가 있다. 사회위원회(Office of Human Development), 일치위원회(Office of Ecumenical and Interreligious Affairs), 복음화위원회(Office of Evangelization), 교육위원회(Office of Education and Faith Formation), 홍보위원회(Office of Social Communications), 평신도위원회(Office of Laity and Family), 신학위원회(Office of Theological Concerns), 성직자위원회(Office of Clergy), 그리고 수도자위원회(Office of Consecrated Life)다.[17] 사회위원회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치위원회는 종교간 문제를 다룬다. 복음화위원회에는 선교 관련해서 선교 사도직 주교 연구회, 성서 관련해서는 성서 사도직 주교 연구회가 있다. 평신도위원회에는 평신도 사도직 주교 연구회와 아시아 통합 사목적 접근 프로그램이 있다. 홍보위원회는 홍보주교연구회가 있으며, 신학위원회는 아시아의 관심사와 관련한 특정 신학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FABC는 자발적인 협의체로서 결코 주교회의의 상위기구가 아니다. 의결사항과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대신 FABC는 주교와 회원국 주교회의, FABC 지역회의들의 자율성을 존중(FABC 정관, 제3조)[18] 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3.2 FABC 활동의 한계

FABC는 아시아 공동선을 위해 보물과 같은 수많은 문헌들을 발표했다. 문헌들의 관심사는 대체로 종교간 대화와 빈곤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ABC의 주된 관심이 '종교 다원주의 신학'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비서구적이며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주목을 받았다.[19] 종교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아시아의 수많은 종교와 다양한 문화를 염두에 두면, 종교간 대화는 아시아의 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종교간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위원회에서 관심을 두는 빈곤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보다 현실적이다. 세계화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난과 이주에 대한 연구 및 그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교회활동을

16) 에드문드 치아,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21.
17) 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 http://www.fabc.org/offices.html.; 에드문드 치아, Ibid.,, 25-26. FABC 일치위원회 총무인 에드문드는 2004년 현재 7개 위원회로 발표했다. FABC는 2004년 설립된 성직자 위원회와 수도자 위원회 포함 9개 위원회를 등록하고 있다.
18) 에드문드 치아, Ibid., 22-23.
19) Ibid., 19-20.

제시하기도 한다.[20] 그러나 아쉽게도 평화와 정의에 대한 문헌은 매우 적다. 더욱이 그 논의는 아시아-태평양 연합의 지평 위에서 이루어져 환태평양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2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떠올리게 하는 구도다. 기존의 환태평양 연합체 지역 구도 보다는 이제 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진행 사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또 최근 120년간 가톨릭 인구가 비서구권에서 증가하면서 전 세계 가톨릭 인구의 70프로가 비서구권에서 살고 있다.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의 70프로도 아시아에 있다.[22]

FABC는 그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아시아 평화에 미친 영향은 체감되지 않는다. 45년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지닌 미얀마에서, 결국 쿠데타 7개월째 사령관이 스스로 총리에 취임하면서 군부통치가 공식화되었다. 무고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올해 2월 현재까지 사망자 1557명, 체포된 이는 1만 명이 넘는다.[23] 계속되는 폭력과 희생, 군부통치의 등장을 목격하면서도 FABC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한국천주교회는 정의평화위원회 등 개별 단체들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모금액을 전달했다. 아시아 교회들의 활동이 지엽적으로 전개되는 느낌이다.

물론, FABC의 고충은 있다. 우선, 그 회원국 주교회의가 방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면 과제가 매우 다양하며, 회원 모든 국가에게 타당한 사목방침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그 방대한 영역에 비해 가톨릭 인구의 비중이 매우 적다. 이 점은 FABC가 운영비를 해외의 원조기구에 의존하는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FABC는 회원국 주교회의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운영된다. 그것의 의결사항과 권고의 구속력을 알기 어렵다. FABC의 합의구조가 견고해지고, 회원 주교회의들의 연대적 구속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FABC의 이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아시아 가톨릭 신앙인이 인지해야할 공동의 과제다. 이런 한계상황에서도 아시아 교회는 지역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

20) Nithiya(ed.), *Socio-pastoral advocacy for the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of Asia*, (Manila: Office for Human Development, FABC, 2011).

21) 평화에 대해 논의한 문헌들은, FABC Paper No.102, *Towards a culture of peace in the 21st century,* 2001. 그리고 FABC Paper No.164, 2019. 등이다. 이 문헌들을 결과물로 제출한 세미나에는 'Asia-Pacific Justice and Peace Workers Network'나 'Asia-Pacific alliance'가 참여하고 있다.

22) Thomas C. Fox, *Pentecost in Asia. A new Way if Being Church*, (New York: Orbis Books), 2003. xiv.

23) 석진희, 「불에 타고 있으니, 피로 불을 꺼야한다.」, 『한겨레』 (2022.02.19.), 30.

4. 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FABC의 역할

FABC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두 가지 상황을 참고한다.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관련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EU)의 사례다. 유럽연합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유럽연합이 세계평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구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지역공동체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은 그리스도교와 긴밀한 관계를 지닌 지역으로, 유럽연합 형성과정에서도 가톨릭교회의 역할은 중요했다. 유럽연합의 사례는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FABC가 지역연합의 목적설정과 운영 원칙을 만드는데 참고할만하다.

4.1 FABC의 기회와 소지역 중심체제의 필요성

최근 미얀마 사태와 더불어 백신불평등으로 인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다. 인도는 한때 '지옥'으로 불렸다. 바티칸에서 "가난한 나라에도 백신을" 보내기 위한 모금을 했다.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11월 현재 모금액 500만 달러(약 59억)를 모았다.[24] FABC의 활동은 감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FABC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지역연합의 성공사례로 주목되는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주교회의위원회(COMECE: The Commission of the Bishops' Conferences of the European Community)는 지역연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에 공식 출범했지만, 이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부터 그 과정이 시작되었다. 1967년 유럽공동체(EC)는 기존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일원화하고 관세동맹을 결성한다. 유럽연합의 틀을 완성한 것이다. 유럽주교회의위원회는 1980년대 설립되었다. 유럽연합 교황대사는 1999년에 임명되었다.[25] 유럽주교회의는 유럽연합 27회원국의 주교회의들의 연합이다. 이 조직은 유럽연합 기구들에게 주교회의를 공식적으로 대변한다. 유럽주교회의위

---

24) 한겨레, 「교황, '김대건 신부 탄생 200년'에 '한반도 평화정착' 기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 (접속일: 2022. 2. 20)

25) Lucian,N.Leustean/ John T.S. Madeley(ed.), *Religion, Politics and Law in the European Union*, (New York: Routledge, 2013), 2-3. COMECE는 The Council of the Bishops' Conferences of Europe(CCEE)과는 다른 조직이다. CCEE는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33인의 로마 가톨릭 주교회의의 대표 회의다. 이 조직에는 EU의 비회원국 주교도 포함되어 있다.

원회를 구성하는 주교들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임명한다. 사무국은 브뤼셀에 있다. 유럽주교회의위원회의 책무는 유럽연합 모든 분야에서의 정치적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조직의 특성은 유럽연합과 관련한 광범위한 의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수용력이다. 사회정책으로부터 지구온난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신학자들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유럽연합의 정치적 법적인 모든 문서들을 번역한다. 이 작업은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유럽연합 행정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반응을 신학적이 아니라, 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다.[26]

FABC는 아시아 지역연합이 결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그 목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큰 기회가 있다. 아시아 공동선을 위한 지역 교회들의 적극적 협력방안은 오히려 국가 간 활동을 고무할 수 있다. FABC의 회원국 주교회의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전제 아래서다. 여기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시아가 지구의 32%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FABC는 사목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아시아의 종교, 문화, 사회-정치적 상황은 나라마다 매우 달라서 각 나라에 맞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목적 권고를 제시하기가 몹시 어렵다."[27] 이 어려움은 FABC의 것만은 아니다. 아시아에서도 공동체 논의가 시작되면서 아시아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지역통합 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아시아 교회에 적용이 될 만한 통합모델은 "다중심 모델(Multi-core model)"이다.[28] 지역통합을 주도하는 중심을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으로 여럿 두자는 제안이다. 우선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정치, 경제 발전에 따라 비슷한 국가들을 통합하고, 다른 하부들과는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와 비슷한 방안으로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시아도 '6자+몽골' 형태로 동북아시아국가연합(ANEAN)을 만들고 이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연합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29]

---

26) Peter Kratochvil/ Tomas Dolezal, *The European Union and the Catholic Church*, (England: Political Theology of European Integration, 2015), 67-69. 159; COMECE, The Catholic Church in the European Union, http://www.comece.eu/seit/en/whoweare.

27) FACE 신학자문위원회, 『종교들과의 대화 -사목 신학적 반성(1984)』, https://cbck.or.kr/Documents/Other, 14.

28) 박제훈, 「아시아지역통합 연구」, 123.

29)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9.

FACE 또한 효율적 사목을 위해 지역의 중심을 여러 곳 두면 좋을 듯하다. 동북아의 중심은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한국이 좋을 듯하고, 동남아에서는 가톨릭 인구가 많은 필리핀 정도가 떠오른다. FABC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교회와 지역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연합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의 중심들과 교회의 중심들이 일치한다면, 밀접한 상보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2 인권에 기초한 평화공동체 길잡이

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인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인권에 기초한 공동체 질서를 만드는 일은 국제질서에도 부합하며, 유럽연합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침이기도 하고, 가톨릭의 평화관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아시아 지역공동체 담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평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인권의 내용 및 제도를 다음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4.2.1 인권법 제정

20세기 들어, 평화는 인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천명했다.[30] 이것이 도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인권보장체계는 두 개의 중요한 시스템을 가진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이다. 곧, 유럽인권협약(1953년 체결), 유럽연합법원(1958년 설립), 유럽인권법원(1959년 설립)이다. 유럽연합의 법적 체제는 합의(consent)를 통해 도출된 조약들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조약을 헌법으로 전환한 대표적 전형이다.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구조는 다수결에 의한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유럽연합 법원은 회원국가에 대해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31] 조약을 헌법으로 전환한 이 사례는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법적 체제가 전무한 아시아가 주

30) 이부록· 조효제· 인지미, 『세계인권선언』, (서울: 프롬나드, 2012). 18-19.
31) 박진완,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아시아에서의 국제인권법 모델수립을 위한 시론」, 『유럽헌법연구』, 15(2014,6), 129-130.

목할 점이다. ‘합의’ 또는 ‘조약’의 실정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이미 만민법(jus gentium)이 그 정당성을 근거 지었다. 만민법은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83~1546, 도미니코회)와 수아레즈(Francisco Suárez, 1548~1617, 예수회)에게 완성되었고,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비토리아와 수아레즈는 만민법의 목적을 ‘Bonum Orbis’(세계 공동선)로 이해하고 국가 간 질서를 규정했다. 그들은 만민법 규정이 실정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확언했다. 비토리아는 만민법이 모든 민족들의 실질적인 공동합의와 조약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으로, 수아레즈는 만민법이 불문법으로써 모든 민족들의 공통된 관습을 토대로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으로 설명했다.[32]

아시아에서도 지역적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권선언들이 있다. 1999년 1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WWC)가 채택한 인권선언, 1998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발표된 ‘아시아 인권헌장’이다. 인권선언들 외에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 협력도 있다. 일례로,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는 여성매매, 이주노동자, 난민, 원주민 등 네 가지 문제는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지역적 협력과 공동작업의 경험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인권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협약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33] SAARC가 언급한 문제들은 FABC도 적극 개입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지역의 인권선언과 협력활동은 장래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의 법적 체제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역차원의 인권 조약이 채택되는 경우, 각 정부는 인권을 감독하고 이행하는 장치에 보다 쉽게 합의할 수 있다.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한 비생산적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4.2.2 평화권

평화권(the right to peace)은 인권과 평화를 하나로 결합시킨 개념이다. ‘평화 속에 살 권리’이면서 동시에 ‘연대권’이다. 1998년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아시아 인권헌장(1998년) 뿐 아니라 수많은 국제적 선언이 평화 속에 살 권리를 천

32) 심현주, 「가톨릭전통에서의 만민법 사상」, 『가톨릭철학』, 21(2013,10), 105.107.113-117.
33) 장복희,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제도」, 60.

명하고 있다.[34] 1977년 당시 유네스코 '인권과 평화' 세션의 회장이었던 카를 바삭(Karel Vasak)이 제3세대 인권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제안하고 그 중 하나로 평화권를 제시했다. 제3세대 인권은 국제 연대권으로서 평화, 개발, 건강한 환경, 소수집단의 자기결정권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할 권리를 포함한다. 연대권은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를 모두 아우른다. 제1세대 권리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2세대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개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요구하기 위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1, 2세대 권리는 개인이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세대 '연대권'은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형제애도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35]

또한 평화권 개념은 '인권에 기초한 평화'라는 가톨릭의 평화관이기도 하다. 요한 23세(1958~63)는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에서 "모든 전쟁은 인간 이성에 위배된다."[36] 며 모든 전쟁을 거부했다. 대신 보편적 인권의 가치 위에 평화를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정치적 질서로 제시했다.[37] 이어, 바오로 6세(1963~1978)는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에서 평화를 더욱 구체화 시킨다.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교종의 슬로건은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구조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평화는 전 인류의 공동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의의 질서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다.[38] 교종은 평화와 정의를 결합시키고, 교황청 직속 산하에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두 교종의 시기에 교회는 평화의 소극적 개념을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면서 새로운 '평화윤리'를 제시하게 되었다. 독일주교회의는 이 두 교종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현대 가톨릭의 평화윤리 핵심을 "기본권인 보편적 인권존중", "국가 간 정의", "세계평화질서의 발전"으로 이해한다.[39] 요한바오로 2세는 "평화에 대한 권리"를 촉구하기도 했다.[40]

---

34) *Asian Human Rights Charter*, Gwangju, 1988; 심현주, Ibid., 15.17.

35) 이경주, 『평화권의 이해』, (서울: 사회평론, 2014), 20; 장복희,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제도」, 135; 심현주, 「가톨릭의 평화사상과 평화권 연구」, 『가톨릭철학』, 34(2020,5), 19.

36)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0[2]), 127항

37) Ibid, 110-114항.

38)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14,76항.

39) Die Deutschen Bischöfe, *Gerechtigkeit schafft Frieden*, (Bonn: Deutsche Bischofskonferenz, 1983), 43-48.

40)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인권과 사목』,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89.

평화권 촉진은 그 자체로 다른 차원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올 수 있다. 첫째는 평화담론을 확장할 수 있다. 그 담론이 여전히 정부, 정치 군사, 남성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평화 연대권은 개인, 여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로 지역적 차원의 초국적 인권체제는 근대 인권의 한계를 극복한다. 근대인본주의 정신에서 탄생한 인권은 근대국가사상에 갇혀버렸다. 영토로 경계가 그어진 국가의 안위와 부국강병이라는 근대국가의 가치는 특히 아시아에서 인권의 가치를 넘어서는 지고의 가치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자기중심적 접근'(me-first approach)이 글로벌한 위협에 맞서는데 필요한 국제 연대를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비해 국가 간 협력, 행동준칙 등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로 했다.[41] 연대를 좌절시키는 '우리국가' 중심은 평화를 만드는데 결코 기여할 수 없다. 평화권은 평화가 국가의 권리가 아닌 개인과 집단의 권리임을 천명함으로써, 근대국가의 한계를 넘어선다. 인권을 지역평화의 기초로 삼은 유럽연합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다.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 2007)은 유럽연합의 운영원칙을 규정했다. 공동외교안보정책 외에도 환경정책, 단일시장을 위한 정책,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주요한 정책 등을 규정한다. 눈에 띄는 점은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공식문서로 채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설립조약(TEU) F조 2항은 "연합은 …유럽협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고, 또한 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회원국에 공통하는 헌법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규정했다.[42]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 정책 역시 유럽연합의 안보 강화뿐 아니라, 유엔헌장원칙에 부합하여 평화와 국제안보 추진, 국제협력과 민주주의와 법치의 추진, 인권존중 등을 목표로 확정했다. 이는 유럽 회원국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안전보장과 민주주의가 그 지역의 인권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43] 유럽인권보장체계나 안보협력체제는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구축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며, 인권보호가 곧 안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유럽연합이 인권을 기본 가치와 원칙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유럽연합의

41) 박병수, 「'자국중심태도 버리자' WHO, 팬데믹 조약 만든다.」, 『한겨레』 (2021.10.29.), 2.
42) 장붕익, 김용민 외, 『유럽연합. 연속성과 정체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62-64; 채형복,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서울: 높이깊이, 2015), 110-119.
43) 장붕익, 김용민 외, Ibid, 250; 박선영,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 계수를 위한 제언: 헌법전문의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연구』, 14(2013,12), 17-19.

목적이 단지 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실현을 통한 구체적인 세계평화 실천임을 증명한다. 이런 점이 20세기 중반 이후 결성된 지역통합들과 다른 면이다. 20세기 중후반 활성화된 지역통합은 무엇보다 냉전 이후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주의를 살리기 위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다. 경제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지역통합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유해야할 가치를 선택하고 법률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규범적 통합이라 불린다.[44]

보조성 원리로 이해할 때, 안보의 목적은 국권이 아니라 인권이다. 국가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국가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최상의 권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 인권법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자체로 아시아의 안보방안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과제다.

4.3 국가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유엔의 3대 기둥은 '평화-인권-발전'이다. 유엔은 이 세 가지 가치와 목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시아 지역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다. 교회가 아시아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또 다른 사안은 국가 간 균형발전에 대해서다. 이 지향은 이미 바오로 6세가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슬로건에 담았다. 국가 간 균형발전은 군비축소, 전 세계 복지확대, 인권증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내용을 가진다.

아시아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은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아시아는 아세안+3을 축으로 하는 시장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은 평화를 위한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원칙을 구상했다. 그럼에도 아시아의 국가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통한 평화에 대한 구상은 이미 1910년 안중근 의사에게서 제시되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공존에서 성립한다고 믿었고, 아시아 국가들의 공존을 위해 '지금까지 세계열강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일본에 제시했다. (1)여순에 평화회의를 상설시키고 회원을 모집하여 1엔을 회비로 정수한다. (2)한중일 청년들의 공동 군대를

44) 박제훈, 「아시아지역통합 연구」, 116-117.

창설하여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형제애를 키운다. (3)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해 화폐를 통일시키고 공동은행을 설립한다. (4)한중일 황제가 로마교종에게 맹세하면 국제적으로 신용을 얻게 될 것이다.[45] 안중근의 제안은 국제연맹보다 10년이나 앞서고,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보다 40년이나 앞선 혜안이었다. 여기에서 평화 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여전히 중요하다. 바오로 6세가 군비축소 비용으로 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 제안들은 유럽연합이 실천하고 있다. 1993년 유럽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발족하면서 유럽연합은 개발협력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조약은 "개발협력정책의 목표는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경제에 개도국을 점진적이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며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금을 회원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사용한다. 1992년부터 평균 연간 10억 유로 이상을 전 세계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유럽연합의 원조 경향은 동부유럽과 유럽대륙 주변국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2000년대는 유엔뿐 아니라 전 세계 160개국이 유럽으로부터 다자간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국제지원의 규모는 매년 약 300억 유로로 전 세계 지원 총액의 55%에 해당한다.[46]

국가 간 균형발전 문제는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2018년 한국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21년 12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쁘라윳 찐오차 타이 총리를 방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도 겸임하고 있다. 양국 간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욱 장관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2021년 한해 한국은 약 6조원에 달하는 국산무기를 동남아에 판매했다. 타이에서 시위대에게 사용되는 최루탄도 한국산이다.[47] 1980년 발표된 브란트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제3세계의 발전문제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강대국들이 군축에 나서지 않으면 신국제경제질서는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브란트 보고서는 남북문제가 군축과 직결되어 있음을 갈파함으로써 발전과 평화를 하나의 길로 제시한 것이다. 바오로 6세는 1976년 9월 <교황과 군축>이란 문서를 유엔 군축위원회에 전달했다. '첼리(당시 바티칸 상임대표) 문서'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군축을 위한 기존 제도가 여전히 도움이 되는가?'를 물으며, 군축을 위해서는 국

45) 안중근, 『동양평화론』, (서울: 독도도서관친구들, 2019), 22-39.
46) 장붕익, 김용민 외, 『유럽연합』, 240-243.
47) 홍명교, 「사람 대신 무기 앞세운 동남아 외교가 성공?」, 『한겨레』(2022.1.28.), 15.

권이 아닌 '인류의 형제애'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48] 따라서 국가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일은 군비경쟁과 정규적 군사훈련을 멈추도록 촉구하는 일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군비경쟁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며 공동선을 위협하는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이다.

아시아는 그 어느 대륙보다 국가 간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인권으로서 개발권은 분명 유럽과는 다르게 개도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사안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6월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가난한 국가에서 절대 빈곤층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 간 또는 지역시민 사이의 불균등 발전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알려준 바와 같이,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FABC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군비증강 대신 인권 중심의 외교를 하도록,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 차원의 평화기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FABC도 평화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교황청에서 가난한 나라에 백신 보내기 위한 모금을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평화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아시아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지속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명한 사후평가과정을 거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개도국 정부나 지자체 복지 기관들에게 기부하면서 인권증진의 조건을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지원받은 정부나 기관들은 지역적 인권협력에 참가하게 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4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역할

교회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의 하부구조에 속하는 조직이며, 종교의 모든 역할이 공적영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교회의 활동은 하나의 NGO활동이 될 것이다.[49] 그러나 아시아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회의 활동은 신앙적 사명이기도 하다. FABC의 회원국 주교회의는 국가와는 독립된 고유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교회는 신앙에서 발견하는 가치관을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을 할

48)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 외, 『평화윤리』, 김윤옥. 손태규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39-241; 심현주, 「가톨릭의 평화사상과 평화권 연구」, 13.

49) Franz Furger, *Christliche Sozialethik.*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1), 174-177.

때 교회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가 유럽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가톨릭의 문화 정체성을 강조했을 때, 유럽에서는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을 재건하는 일과 종교일치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다른 종교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 유럽의회의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대화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종교의 보수적 가치들이 유럽을 지배하게 될 것에 반대했다. 이에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기구들과 종교들과의 대화를 준비했다. 그 결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기본원칙을 정교분리와 불가침적 인권으로 결정했다. 인권의 가치는 유럽의 휴머니즘과 회원국의 법적(성문법 및 불문법) 유산이라고 밝혔다. 문장삭제(17조).

정교분리란 모든 종교들에게 차별 없는 자유를 보장하며 종교의 사회적, 교육적, 시민적 역할을 공적영역에 편입하는 것이다. 정교분리는 국가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실천된다. 1789년 혁명을 겪은 프랑스는 종교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한 토론이 되풀이 되면서 종교가 공적 의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등의 경우는 다르다. 독일의 경우, 종교개혁과 나치즘을 겪은 국가로서 가톨릭교회는 공적 관심에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인식한다. 무엇보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협력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독재를 예방하는 일이다. 독일은 교회의 공적 책무를 수용하고, 교회를 시민단체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적자리에 위치 지웠다.[50] 일반적으로 종교가 공적 의제에 협력적일 경우에 정치참여는 금지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이 정한 기본원칙은 그리스도교적 문화 동질성 대신에 유럽의 휴머니즘 전통을 선택했다. 바티칸 시티는 유럽에 존재하지만, EU의 구성 국가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자문역할을 맡는다. 유럽주교위원회 또한 유럽연합 활동에 대한 반응을 신학적이 아니라, 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독일 사회윤리학자 푸거(F.Furger)는 교회가 어떤 행동규범을 확립할 때 신학적인 성찰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작업을 위해 교회는 다른 인문학들과 팀을 이루어, 자신의 윤리와 "교차점"을 지니는 그들의 기능적 지식들을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 이 작업은 신학적· 철학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교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교회

50) Leustean/ Madeley(ed.), *Religion, Politics and Law,* 3-5. 19-23. 25-26; Kratochvil/ Dolezal, *The European Union*, 130-131, 154-155; 채형복,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37-38.

가 본디 가지고 있는 동기에 따라, 점차 더 큰 인류를 위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숨겨진 불의를 "비판적이고 고무적으로" 탐구해야 한다.[51]

유럽연합의 방침과 유럽주교위원회의 활동방법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인 아시아에도 적합하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시아는 예수님과 교회의 탄생지'[52]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교가 아시아 문화의 한 뿌리임을 강조했다. 이런 접근은 지역연합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지역연합은 오히려 지향해야할 미래의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아시아는 과거의 어떤 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FABC는 아시아복음화를 위한 방안으로 삼중대화를 강조한다. 가난한 사람들, 아시아 문화들, 종교들과의 대화다. 삼중대화는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시아 NGOs와의 대화, 다른 학문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대화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대화들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상황들을 폭로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연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서술했던 FABC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신학자들 다른 학문의 전문가들 NGO's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이는 아시아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새로운 모습'일 수 있다.

5. 결론

아시아평화공동체는 아시아를 새롭게 창조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서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제안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하지 않은 일들이다. 첫째, 교회 내적으로 효율적인 사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여러 개의 소 중심체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중심들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를 말할 때, 교회는 인권공동체를 말해야 한다. 인권이 평화의 최종목표임을 명심하고, 평화권을 보장하는 아시아 인권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국가중심주의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셋째, 평화기금을 모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

51) Franz Furger, *Christliche Sozialethik*. 15.
52) 요한 바오로2세, 『아시아 교회』(ECCLESIA IN ASIA), 5항.

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군비를 축소할 것과, 그 축소된 비용을 아시아 공동평화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NGOs와의 협력, 다른 학문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증진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모든 주교회의는 해당 지역의 공동선에 책임이 있다. 아시아를 평화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FABC의 지도력과 교회들의 연대는 그 자체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하나의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FABC는 아시아 전체에 가톨릭을 대표하며, 장래 아시아 공동체에 든든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FABC는 유럽과는 다른 또 하나의 대안적 평화공동체를 아시아에 창조해야하는 사명을 갖는다. 아시아문명의 역사적 대전환을 위한 과업이자 신앙적 사명이다.

참고문헌

강상중,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이경덕 옮김,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2.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인권과 사목』,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박선영,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 계수를 위한 제언: 헌법전문의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연구』, 14(2013,12), 1-36.

박제훈, 「아시아지역통합 연구: 로드맵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비교경제연구』, 19/2(2012,12), 101-138.

박진완, 「국제적 헌법주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아시아에서의 국제인권법 모델수립을 위한 시론」, 『유럽헌법연구』, 15(2014,6), 129-166.

심현주, 「가톨릭전통에서의 만민법 사상- 그 사상적 발전과 현대적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 철학』, 21(2013,10), 99-132.

_____, 「가톨릭의 평화사상과 평화권 연구 – 한국사회의 새로운 평화원리 구상」, 『가톨릭 철학』, 34(2020,4), 5-40.

안중근, 『동양평화론』, 서울: 독도도서관 친구들, 2019.

에드문드 치아(Edmund Chia),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의 역사와 조직」, 『사목 』, 이준혜 편역, 308(2004,9), 19-28.

요한 23,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0[2].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아 교회』(Ecclesia in Asia),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신지역주의 선언』, 이원덕 옮김, 서울: 일조각, 2004.

이경주,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법학연구』, 18/3(2015,9), 25-54.

이경주, 『평화권의 이해』, 서울: 사회평론, 2014.

이부록 조효제 인지미, 『세계인권선언』, 서울: 프롬나드, 2012.

장복희,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제도 설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 국제법 연구』, 5/1(1988,5), 33-67.

장붕익 김용민 외, 『유럽연합 연속성과 정체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채형복,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서울: 높이깊이, 2015.

한국주교회의 교회법 위원회(역),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후버, 볼프강· 로이터, 한스 리차드(Guber, Wolfgang/ Reuter, Hans-Richard), 『평화윤리』, 김윤옥. 손태규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Altvater, Elmar/ Mahnkopf, Birgit, *Grenzen der Globalisierung*, *Ökonomie, Ökologie und Politik in der Weltgesellschaft*,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1997.

Asian Human Rights Charter, Gwangju, 1988.

Die Deutschen Bischöfe, *Gerechtigkeit schafft Frieden*, Bonn: Deutsche Bischofskonferenz, 1983.

FABC Paper No.102, *Towards a culture of peace in the 21st century*, 2001.

FABC Paper No.164, *Migrants, Refugees, the displaced and Human trafficking and renewable energy options in the Asian context*, 2019.

Fox, C. Thomas, *Pentecost in Asia. A new Way if Being Church*, New York: Orbis Books, 2003.

Furger, Franz, C*hristliche Sozialethik. Grunlagen und Zielsetzungen*,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1.

Shim, Hyunju, *Die herausforderung der koreanischen Kultur durch die hegemoniale Globalisierung. Ein Beitrag zur Bestimmung des Verhältnisses intra-, supra-. und transkultureller Werte*. Frankfurt am Main· London: IKO, 2004.

Kratochvil, Peter/ Dolezal, Tom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Catholic Church,* England: Political Theology of European Integration, 2015.

Leustean N.Lucian/ Madeley T.S. John(ed.), *Religion, Politics and Law in the European Union*, New York: Routledge, 2013.

Nithiya(ed.), *Socio-pastoral advocacy for the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of Asia*, Manila: Office for Human Development, FABC, 2011.

「교황, '김대건 신부 탄생 200년'에 '한반도 평화정착' 기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 (접속일: 2022. 2. 20)

박병수, 「'자국중심태도 버리자' WHO, 팬데믹 조약 만든다.」, 『한겨레』, 2021.10.29. 2면.

석진희, 「불에 타고 있으니, 피로 불을 꺼야한다.」, 『한겨레』, 2022.2.19., 30면.

위키백과사전, https://en.wikipeida.org/wiki/ *F*ederation on Asia Bishops. (접속일: 2021.03.12.)

홍명교, 「사람 대신 무기 앞세운 동남아 외교가 성공?」, 『한겨레』, 2022.1.8., 15.

COMECE, *The Catholic Church in the European Union*, http://www.comece.eu/seit/en/whoweare. (접속일: 2021.04.21.)
FACE 신학자문위원회, 『종교들과의 대화 -사목 신학적 반성』, https://cbck.or.kr/Documents/Other. (접속일: 2021. 11.11.)
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 http://www.fabc.org. (접속일: 2022.02.12.)

초 록

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의 역할 모색

심현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평화건설을 위해 지역적 협력방안을 선택했다. 아시아는 아직 어떤 지역적 협력 체제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정치안보,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계가 많다. 인권 담론이 부재하며, 국가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배타적 지역주의를 부추긴다. FABC는 전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아시아 인권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평화기금을 모아 아시아 국가 간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열어야 한다.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에게 군비축소와 평화기금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아시아 NGOs, 그리고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유한 가치와 맞는 일들을 비판적이고 고무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FABC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협력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사목의 효율성을 위해서 FABC의 체제나 운영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 유럽연합과 또 다른 대안적 평화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아시아 교회들에게 있다.

주제어: 아시아평화공동체, 아시아주교회의연합. 평화-인권-발전, 유럽연합, 평화권,

Abstract

The Study on the role of the FABC for building of an Asian Peace Community

Shim, Hyun Ju

After World War II.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opted for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establish peace. Asia still has not established any regional cooperation systems. The discourses about an Asian community are being conducted at the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cultural levels. But there's no human rights discourse, the imbalance between countries intensifies, and it promotes exclusive regionalism. FABC has to aim for an Asian peace community that supports the world peace. It should present the vision of the Asian human rights community. It should gather the peace fund and set up an activity that help minimize the imbalance between Asian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should call on Asian countries to reduce armament and to raise a peace fund. Also, the Churches as a member of civil society should have conversation with Asian NGOs and experts in different fields of study, so that it could do things that fit it's own values critically and encouragingly. For the efficiency of pastoral activity, FABC could change some its system. FABC can do cooperative activities that can be an excellent example for Asian countries. Asian Churches have an important task to create another alternative peace community with the EU.

Key Words: Asian Peace Community, 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 European Union, Peace-Human right-Development, The right to peace.

논문 투고일	2022년 2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2년 4월 02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2년 4월 04일